

의안번호	제 20 호
의결년월일	1998. . .

의결사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년월일	1998. 7. 20.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
----------	----

제출일자 : 1998.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공유재산관리지침(행정자치부)상의 매각면적이 상호 불일치하여 공유재산 매수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매각 면적을 일치시켜 불편을 해소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81. 4. 30이전 건물 소유자에게 시유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에 있어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현행조례 제38조제3호)

나.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동지역 300평방미터, 읍면지역 700평방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8조제3호)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및 공유재산관리지침(행정자치부)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998. 4. 23 - 5. 12(20일간)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게재

다. 접수된 의견 :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물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 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규모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illegible]